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03월 26일 (목) 오전 9:00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삼평동) ECO Hub 2층 SUPLEX Hall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 사항

제1호 의안 : 제57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배당 예정액 : 보통주 1,500원, 우선주 1,55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참조)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 남기중) (별첨 참조)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 김진일) (별첨 참조)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별첨 참조)

제6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별첨 참조)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 방법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주총회 참석

- 본인 참석 :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참석 :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본인 신분증 사본(본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임감증명서) 및 위임장(아래 ※ 위임장 기재사항 참고)

※ 위임장 기재사항

- 주주(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주주(본인)가 대리인에게 당사의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일자, 주주(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나. 전자투표·전자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03월 16일 오전 9시 ~ 2026년 03월 25일 오후 5시
 - * 기간 중 24시간 행사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 접속 및 인증서를 통한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0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 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당사는 2026년 03월 17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www.skdiscovery.com>)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04일



대표이사 손 현 호 (직인생략)

[별첨]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5 조 (총회의 소집) <u><신설></u>	제 15 조 (총회의 소집) <u>⑥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u>	당사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의무 도입 대상회사는 아니나, 상법 개정 취지를 존중하여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
제 20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권 증명방법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명시 (상법 제 368 조 제 2 항)
제 21 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u><신설></u>	제 21 조(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② 제 15 조 제 6 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본점에 비치한다.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문 신설
제 22 조 (이사수와 선임방법) ④ 당회사는 이사 중 일부를 사외이사로 하며, 사외이사의 수, 자격요건 기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2 조 (이사수와 선임방법) ④ 당회사는 이사 중 일부를 독립이사로 하며, 독립이사의 수, 자격요건 기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외이사 명칭 변경(상법 제 542 조의 8)
제 24 조 (보선) ① 이사의 임기 중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법 제 383 조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거나, 상법 제 542 조의 8 제 1 항에서 정한 사외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후임 이사를 보결 선임한다.	제 24 조 (보선) ① 이사의 임기 중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법 제 383 조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거나, 상법 제 542 조의 8 제 1 항에서 정한 독립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후임 이사를 보결 선임한다.	상동

<p>제32조의2 (위원회)</p> <p>① 당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위원회 2. <u>사외이사</u>후보추천위원회 3. 경영위원회 4. 기타 필요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 	<p>제32조의2 (위원회)</p> <p>① 당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위원회 2. <u>독립이사</u>후보추천위원회 3. 경영위원회 4. 기타 필요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 	상동
<p>제 32 조의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p> <p>① 이사회 결의로 제 32 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u>사외이사</u>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u>사외이사</u>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p>	<p>제 32 조의 4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p> <p>① 이사회 결의로 제 32 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u>독립이사</u>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u>독립이사</u>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p>	상동
<p>제 34 조(감사위원회)</p> <p>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p>	<p>제 34 조(감사위원회)</p> <p>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u>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2 인은</u> <u>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u> <u>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u> 한다.</p>	분리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을 1 명에서 2 명으로 상향 (상법 제 542 조의 12 제 2 항)
<p><신설></p>	<p>부 칙 <2026. 3. 26. 개정></p> <p>제 1 조 (시행일)</p> <p>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2 조 제 4 항, 제 24 조 제 1 항, 제 32 조의 2 제 1 항, 제 32 조의 4 제 1 항, 제 2 항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제 20 조, 제 15 조 제 6 항, 제 21 조 제 1 항, 제 2 항은 2027 년 1 월 1 일부터 각 시행한다.</p>	부칙 제 1 조 단서의 경우 개정 상법 시행일과 동일

※ 상기 정관 변경(안)은 금번 제57기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최종 확정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남기중)

가.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남기중	1973.01.19	사내이사	-	계열회사 임원 (SK디스커버리(주) 사내이사)	이사회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남기중	SK 디스커버리(주) 재무실장	2014 ~ 2017 2017 ~ 2022 2023 ~ 현재 2024 ~ 현재	- SK에코플랜트(주)(舊 SK건설(주)) 금융팀장 - SK디스커버리(주) 경영지원실장 - SK디스커버리(주) 재무실장 - SK이터닉스(주) 기타비상무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남기중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후보자는 SK 에코플랜트 금융팀장 및 SK 디스커버리 경영지원실장·재무실장을 역임하며 당사 설립 시부터 신성장 사업 발굴 및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의사결정에 기여한 재무 및 기획 전문가로, 지난 3년간의 사내이사 재임 경험과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재무구조 개선 및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핵심 과제 수행을 통해 당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멤버사의 성장을 지원할 책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진일)

가.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진일	1967.02.14	사외이사	분리선출	계열회사 임원 (SK디스커버리(주)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7 ~ 2011 2021 ~ 2022 2010 ~ 현재 2023 ~ 현재	- 美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선임경제학자 -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장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예금보험공사 차등평가위원회 위원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진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 수행 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p>1. 직무수행 개요</p> <p>본 후보자는 美 연방준비제도 선임 경제학자를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서, 지난 임기 동안 거시경제와 정책 환경 변화를 폭 넓게 살펴 의사결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 향후에도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정밀하게 포착하여 위기 상황에 적시 대비할 수 있도록 경영진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그간 축적된 이사회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p> <p>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계획</p> <p>본 후보자는 관련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며, 선관주의,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p> <p>특히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재산상태 및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p>

마.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p>후보자는 美 연방준비제도 선임 경제학자를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서 지난 3년간 당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직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거시경제 분석과 리스크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제고에 기여하였기에 향후에도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책임자로 판단하여 추천함.</p>
--

■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당기	전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4)	7 (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980백만원
최고한도액	5,000백만원	5,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를 핵심 경영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책임지는 등기이사의 보수 또한 회사의 성과 및 주주이익과 정합성을 갖도록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보수 체계는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이사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됩니다.

이사 보수 한도는 이사회/위원회 운영 확대, 강화된 외부 규제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이사의 책임과 업무량 증가, 성과 창출에 따른 합리적 범위의 보수 변동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당사의 이사 보수 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https://esg.skdiscovery.com/kr/pa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6 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가. 의안 제목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주주환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회사의 자본준비금 5,159억원 중 1,200억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 근거법령: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